

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-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2월 일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·해결하는 마을활동을 지원하고,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네트워크 형성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,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마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안정적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마을사업의 조사, 분석, 평가연구, 자원관리등의 전문성 확보
- 2) 찾·동 마을전문가 사업이 종료되고,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

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 : 3년
- 2) 위탁업무 :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에 관한 사무
 - 마을자치센터의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
 -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-민, 민-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
 - 마포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및 사무
 -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체계 구축
 - 시·구·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개발
- 3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4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구성)

다. 소요예산 : 510,542천원(시비: 500,542천원 구비: 10,000천원)

라. 세부추진일정

- 1) 공개모집 공고 : 2018. 3. 23. ~ 4. 6.
- 2) 신청서 접수 : 2018. 4. 9. ~ 4. 11.
- 3) 선정심사 : 2018. 4. 16. ~ 4. 20.(기간중 1일)
- 4) 심사결과 발표 : 2018. 4. 23.
- 5) 협약체결 : 2018. 4. 27.
- 6) 협약업무 개시 : 2018. 6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<지방자치법>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>

제26조(관리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